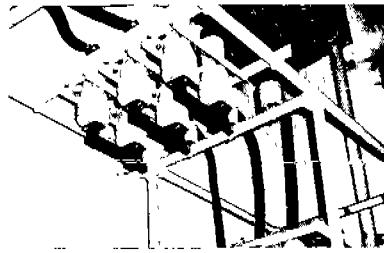


전기사고 소송판례 ①



引入 케이블 移設 工事時 오판으로 感電死亡

〈 1 〉

1. 전기협회의 조사내용

가. 일반사항

- (1) 조사일시 : '87. 5. 8 ~ 14
- (2) 사고장소 : 서울 종로 을지로 2가 D빌딩 전기설비
- (3) 조사자 : 협회 기술과장 김기숙, 대리 이장현, 입회 전기보안담당자
- (4) 사고일시 : '87. 4. 28. 20시 40분경
- (5) 사고사망자 : 전모(당 32세)
제 2종 전기공사업체 소속자

나. 사고개요

- (1) 이 빌딩은 전기설비용량 275kVA인 자가용전기공작물 설치 업체로서 빌딩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한전 콘크리트 전주에 설치된 G.O.S로부터 인입용 케이블을 지하매설하여 6.6kV의 전압을 수전하고 있는 설비로서 서울시의 하수구 보수공사관계로 가 매설된 인입용 지하케이블을 이설하기 위해 전기공사업 2종업체인 성동구 광장동 소재의 S전기(주)에 공사를 발

주하여 시공케 하였다.

(2) 이 공사는 인입용 케이블 이설공사로서 부득이 빌딩에서 약 30m 떨어진 한전 콘크리트 전주위에 있는 G.O.S를 개방시켜야 하므로 G.O.S를 개방시키는 작업조와 변전실에서 MOF 1차측 전선을 절단하는 작업조로 분리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빌딩 변전실에서 대기중인 작업조는 건물 옥상에서 G.O.S 개방여부를 중계하는 작업조의 통보를 받은 후 정전이 된 것을 확인하고 MOF 1차측 전선을 절단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전선 절단 작업조의 작업자(사망자)가 전선절단기로 전선을 자르는 순간 6.6kV의 고압에 감전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다. 조사내용

(1) G.O.S의 분해조사

G.O.S를 분해 조사해 본 결과 G.O.S 각상의 접점은 양호한 상태였으며 T상의 단선 원인은 G.O.S 1차측 케이블(1차부싱부분에서 스위치 개폐 칼날 부분까지의 사이)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2) G. O. S의 동작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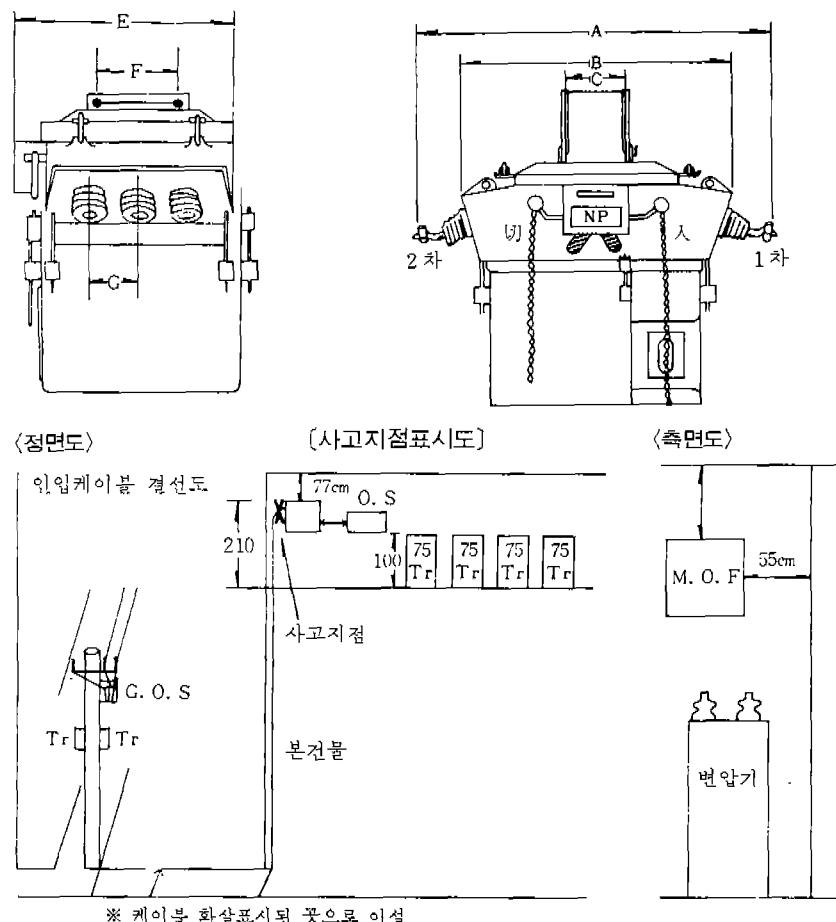
G. O. S에 조작전원 100V를 공급하고 스위치를 투입한 후 GR의 시험버튼으로 차단여부를 시험한 결과 양호하게 차단, 동작 되었으며 G. O. S를 완전 투입하여 스위치를 손으로 잡은 후 GR시험 버튼을 누르면 전자개폐기 진동소리만 나고 G. O. S는 개로되지 아니하였다. G. O. S를 완전 투입치 아니한 상태에서 GR시험 버튼을 눌러도 G. O. S가 동작치 아니하므로 전원이 계속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라. 조사의견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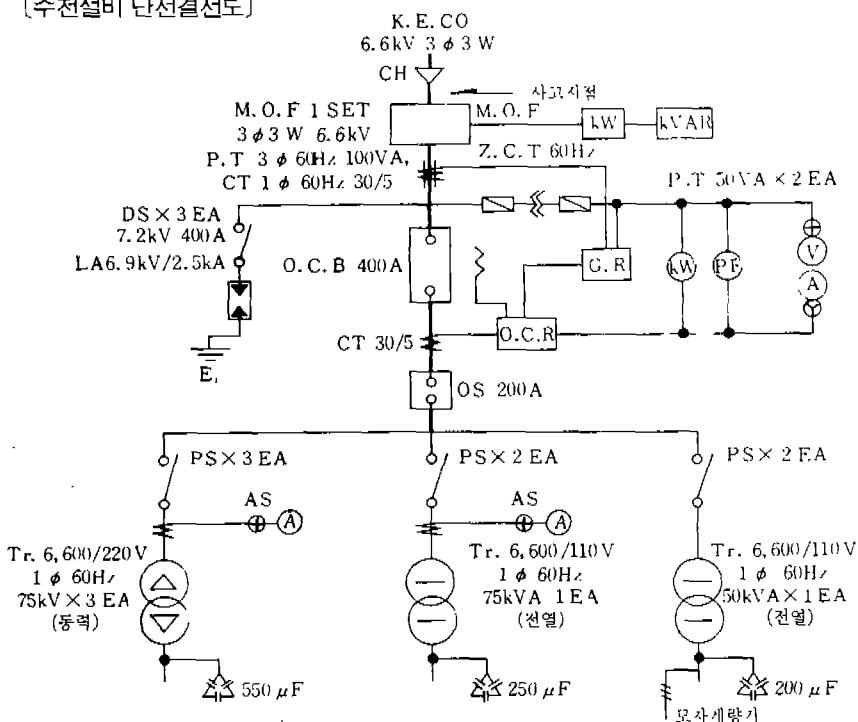
(1) 전기적 사고원인

G. O. S 조작자가 스위치를 개방했을 때 변전실에서 대기중인 작업조가 감전 사망케 된 것은 정전이 된 후 겹전기로 확인하지 않고 케이블 절단작업에 임했으며, G. O. S 조작자는 스위치를 개방시킨 후 개로용 끈을 붙잡아 매어 고정시킬 때 착각하여 투입용 끈을 붙잡아 맴으로써, G. O. S가 통전상태가 되어 변전실에서 케이블 절단작업을 하던 작업자는 6.6kV 고압에 감전되어 사망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자가 감전시 지락되었을 때 G. O. S는 완전투입이 안되면 동작되지 아니하며 (G. O. S동작시험내용 참조) 설령 동작되었다 하더라도 스위치 끈이 매어져 있어 개로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본다.



(수전설비 단선결선도)



(2) 관계법령(전기공사업법) 검토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 3조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업체에 공사를 시공토록 계약 체결된 이번 경우와 같은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 18조, 19조 20조에 의하여 공사를 도급받는 전기공사업체가 본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치 않도록 제반 안전사항을 조치하였어야 했다.

마. 문제점 및 대책

작업자는 작업차수 전에 항상 검진기를 사용하여 전로의 사활여부를 확인하고 개폐기와 차단기류의 동작상태를 정확하게 재확인하여야 했으며 특히 전기공사업체는 시공관리 책임자(전기기술자)를 선임 과정하여 시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공사차수전에 시공관리책임자가 공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

었다.

한편 발주자측에서는 가급적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시공에 임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2. 소장(87. 7. 3)

(원고들 주소) 서울 동대문구 ○○동

원고 박 ○ ○외 3인

위 원고 진○○, 동 진○○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박 ○○(보친)

서울 중구 정동 11의 3(○○빌딩 205호)

위 원고 등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 ○ ○

서울 종로 2가 148의 28

○○○○ 주식회사

1) 피고

대표이사 손○○

서울 성동구 ○○동

○○전기 주식회사

2) 피고

대표이사 황○○

손해배상등 청구의소

청 구 취 지

피고 등은 각자

원고 박○○에게 금21,996,284원

원고 진○○에게 금21,996,284원

원고 진○○에게 금14,330,856원

원고 전○○에게 금1,000,000원 및 1987. 4.29

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푼, 소장 송달일로부터 완재일까지 년 2 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월을 가산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의 1 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분관계

원고 박○○은 본건 피해자 소외 망 진○○의 처이고, 원고 진○○, 동 진○○등은 위 망인의 자녀이며, 원고 전○○은 위 망인의 모입니다.

(2) 불법행위 및 배상책임

(1) 피고에 대하여

위 피고는 전기공사 1급자격증 및 전기공사업 면허증을 취득하여 ○○전기주식회사 상호로 서울 성동구 ○○동에 사업장을 두고 전기공사 하청업을 하고 있음.

피고는 (2) 피고 소유 서울 종구 을지로2가 ○ ○빌딩에 가설된 6,600볼트 고압전기 이설공사를 하청 받아 동 작업을 하기 위하여 전공 소외 주○○ 동 이○○ 소외 망 진○○을 고용 (2) 피고 소유 대일빌딩 9층 변전실에서 작업도중 6,600볼트 고압선을 절단하기 위하여 소외 주○○은 고압선이 ○○빌딩에 들어오는 외선전주에 올라가 스위치(오프)를 끄고 ○○빌딩에 불이 껐진 것을 확인한 후 소외 망 진○○은 빌딩내의 변전실에서 고압선의 이설 작업을 하고 있었는 바, 그때 전주에 올라가 있는 소외 주○○은 자기 땀에는 좀더 안전성을 기한다는 뜻에서 이

미끈스위치에 달려 있는 끈을 전선주에 끊어 놓으려고 무심결에 끈을 잡아 당긴 것이 옆에 붙어 있는 전류가 흐르는 끈을 잡아 당김으로써 다시 온(ON)으로 이어져 전류가 흐르므로서 작업을 하고 있는 소외 망 진○○에 6,600볼트 전류에 감전되므로 현장에서 사망케 이른 것입니다.

위 사고는 피고의 피고용인 소외 주○○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평소 경험법칙상으로 보아 위와 같이 6,600볼트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의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그지식이 풍부한 피고가 작업의 안전과 사고 미연의 방지를 위하여 작업전에 사전 안전에 대한 설명이나 지시를 한 후 작업 현장에서 그때 그때 작업에 대한 지시 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종업원만을 작업 현장에 보내어 작업을 하다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 피고용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자에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고용주인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2) 피고에 대하여

(1) 피고는 위 고압선 입선 이설공사를 (1)피고와 간에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1) 피고가 공사를 함에 있어 (2) 피고는 빌딩 내부의 전기시설을 잘 모르는 외부인인 (1) 피고인이 공사를 칙수하는데는 빌딩내에 설치된 변압기나 전기 배선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기보안담당 2급 기사인 (2) 피고의 피고용인 소외 주○○(전기보안담당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임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작업의 지시의 안내는 물론이고 작업에 임하기 전에 변압기의 고압전류 배선관계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알려 준후 작업에 임하게 함이 경험법칙상 당연하다 하겠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음을 물론이고 본건 공사는 (2) 피고 소유 건물내부의 고압전기 이설공사의 작업 도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2) 피고 또한 배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 책임 범위

協會動靜

◆ '90年度 事業 및豫算案 심의◆

當協會는 10월 20일 '89年度 제 4 차 運營委員會를 개최하고 '90年度 事業計劃 및 収支豫算案을 심의했다.

朴容澈委員長外 8 名의 委員이 참석한 이날 運營委員會는 最近 商工部가 추진하고 있는 電機工業協會(가칭)의 설립추진에 대한 報告가 있은 다음 '89年度豫算보다 6 천 3 백 92만원이 增

소의 망 진○○은 1954. 1. 29생으로 본건 사고 당시인 1987. 4. 28은 만 33년 2개월 29 일이 되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한국인의 간이생명표에 의하면 기대 여명이 34.46년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향후 34년의 생존이 기대되고 만 55세까지는 사고 직전에 종사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매월 순차적으로 수입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하나 소외 망 진운송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일실 수익금을 산출하기로 한다.

(1) 일실수익금

소외 망 진운송은 1987. 4. 28 본건 사고 직전까지 비록 내선 전공의 자격증은 없으나 10년 이상의 전공으로 종사하면서 많은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하여 위 직에 종사하여 왔고 본건의

(2) 피고의 공사에도 (1) 피고로부터 1일금 40,000 원씩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1) 피고의 피용인으로 본건 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위 망인에 대한 1일 노임 단가에 대하여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건설물가 1987. 6 월호에 게재된 1987. 3 현재(본건 사고일을 기준 가장 가까운 달의 임금을 택함) 내선 전공 1일 노임 단가 금 13,100원으로 하고 1개월간의 노동 가동일을 25일로 산정하면 매월금 327,500원 ($13,100 \times 25$)의 수익을 얻을 것이나 동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한 1개월간의 소요되는 식대 및

額된 10억 8백만원의 '90年度 収支豫算案과 事業計劃을 심의하였다.

또한 이 날 會議에서는 새로 制定하는 調査研究業務規程案을 심의 통과시켰다.

그리고 其他 事項에서는 지난 會議 때 토의되었던 技師會員에 대한 分離問題 檢討 事項이 詭傳되어 會員間에 오해가 있었다고前提하고 이 問題는 技師運營委員會에서 討議되어 代表가 나와야 論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생활비를 통계상 30% 보면 매월금 229,250원 ($327,500 \times 70 / 100$)이 매일 일실 손실금인 바 이를 만 55세까지 260개월 (21년 8개월 월미만 생략)간을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의 사전이율을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거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 40,323,424원 ($229,250 \times 175.8928$)이 계산상 명백 피고 등은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위자료

소외 망 진○○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전공에 종사하면서 1980년 원고 박○○과 결혼하여 두 사람 사이에 1남 1녀가 있고 신체건강한자로서 큰 고통없이 비교적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본건 사고로 인하여 한 가정이 파탄되어 버렸고 비운에 처한 망인은 물론이고 어린 자녀를 가진 처자의 앞으로 남은 여생에 대하여 그 고통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보상할 길이 없다 할 것이나 굳이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한다면 피해자 본인 망 진○○에게 금 5,000,000 원 처인 원고 박○○에게 금 5,000,000원 장남인 원고 진○○에게 금 5,000,000원, 딸인 원고 진○○에게 금 3,000,000원 모인 원고 전○○에게 금 1,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결 론

소외 망 진운송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일실수 익금 및 위자료를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을 구하는 액이 금45,323,424원(40,323,424+5,000,000)이나 위 금원을 수령할 본인이 사망하므로 그 재산 상속인인 처 원고 박○○에게 상속 지분 3/8인 금 16,996,284원, 장남인 원고 진○○에게 상속지분 3/8인 금 16,996,284원 팔인 원고 진○○에게 상속지분 2/8인 금 11,330,856원의 각 상속지분과 나머지 원고 등에게 각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증방법 및 첨부서류

- ①호 적 등 본 1통 ⑤주식회사등본 2통
②주 민 등 륙표 1통 ⑥소 장 부 본 2통
③월간전설물가 1매 ⑦위 임 장 1통
④한국인 남자간이 ⑧납 부 서 1통

생명표 1매

1987. 7

위 원고 등 대리인

변호사 이 ○ ○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답변서 제출 및 응소 안내

(1)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잘 읽은 다음 소송에 응소할 의사가 있는 때에는 될 수 있는 한 변론기일의 1주일 전까지 답변서(인지200원 첨부)와 원고 수에 따른 통수의 부본 및 송달료(900원×원고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는 변론기일소환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표시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답변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2)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39조).

(3) 증거가 별 서면이 있으면 미리 사본(상대방 수+1통)을 준비하고, 증인에 관하여는 미리 주소·성명을 알아 두었다가 제때에 제출 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나 제출이 늦을 때에는 이를 받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4)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뜻이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기일이 임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된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법정에 출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소송진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합의부 판찰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5)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기일 전에 변론기일 변경신청서에 그 이유를 자세하게 기재하고, 의사의 진단서 기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이 그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론기일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는 기일변경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변론() 기일 소환장

귀하

87 가합 3750 손해배상 사건

원고 박○○외 3

피고 ○○○○(주) 외 1

1987년 7월 21일 10시가 변론() 기일로 지정되었으니 본 법원 제호 법정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1987. 7. 6

법원주사

1. 출석할 때에는 이 소환장을 담임 법원주사에게 제시하실 것.

2.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실 것.

〈다음 호에 계속〉